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9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 김도읍・이헌승・구자근

신동욱 • 조지연 • 서지영

곽규택 • 김희정 • 김정재

권영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제27조제2항·제6항"을 "제22조, 제27조제2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 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4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호사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 전의 제2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에는 제22조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 조제4항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개 정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관하 여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관한 특례법」 제7조, 제8조,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 제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 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이 경우 "특정강력범죄"는 "성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폭력범죄"로 본다.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 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 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 <삭 제> 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 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 할 수 있다. (5) • (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

| 다)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 재판 |
|----------------------------|------|
| 권을 가지는 경우 제27조 | 제2항 |
| <u>· 제6항</u> , 제29조, 제30조, | 제33 |
|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제34 |
| 조, 제40조제1항, 제41조, | 제42 |
| 조제2항·제4항을 적용함여 | 게 있 |
| 어 "법원"은 "군사법원(고 | 1등법 |
| 원을 포함한다)"으로, "수 | 사기 |
| 관"은 "군수사기관"으로, | "검 |
| 사"는 "군검사"로, "사법 | [경찰 |
| 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 , "국 |
| 선변호사"는 "변호사 지 | 구역이 |
|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 |

②・③ (생 략)